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공무원 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6. 1. 12 「공무원여비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의 단가를 조정함(안 제4조)
 -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 : 1만원 → 2만원
 -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 : 5천원 → 1만원
 - 관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원 : 5천원을 감하여 지급 → 1만원을 감하여 지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,
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18조제1항(대통령령 제18673호)
- 나. 입법예고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의
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4. 검토의견

- 공무원의 여비 현실화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출장을 할 경우의 여비는
-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종전에 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원
인상하여 2만원으로 하고,

-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는 종전에 5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5천원 인상하여 1만원으로 하며,
- 관용차량 운전자 및 운전원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, 종전처럼 여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
-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단가를 변경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